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입학전형 응시원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근거 마련〉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53호)

2025.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 목 차 】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입학전형 응시원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근거 마련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6.

3. 회부연월일 : 2025. 11. 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자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입학전형 응시원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근거 마련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되, 응시하려는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2항 신설).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br>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생략)<br><u>&lt;신설&gt;</u> | 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br>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br><u>②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하려는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u> |

| 현행                                                                      | 개정안                                                                                                                                                                             |
|-------------------------------------------------------------------------|---------------------------------------------------------------------------------------------------------------------------------------------------------------------------------|
| <p>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 ⑬ (생략)</p> | <p><u>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⑭ <u>그 밖에 입학전형의 방법</u>-----</p> <p>-----.</p> <p>③ ~ ⑬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 나. 검토의견

-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의 장은 학생 선발을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sup>1)</sup>.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대학의 장은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발은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sup>2)</sup>.

### 1)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할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 한편, 각 모집별 원서접수 등 선발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sup>3)</sup>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른 각 모집별 선발일정은 다음과 같고<sup>4)</sup>, 각 대학은 이 기준에 따라 수시·정시모집의 원서접수 기간을 ‘3일 이상’이 되도록 각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정하고 있음.

### [모집별 선발일정]

| 구분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 추가모집                            |
|-------|------------------------------------|-------------------------------|--------------------------------|---------------------------------|
| 원서접수  | 2027.9.20.(월) ~23.(목) 중<br>3일 이상   | 2028.1.3.(월)~6.(목) 중<br>3일 이상 |                                | 2028.2.22.(화) ~<br>29.(화) (8일간) |
| 전형기간  | 2027.9.24.(금) ~<br>12.20.(월) (88일) | 가군                            | 2028.1.10.(월) ~<br>17.(월) (8일) |                                 |
|       |                                    | 나군                            | 2028.1.18.(화) ~<br>25.(화) (8일) |                                 |
|       |                                    | 다군                            | 2028.1.31.(월)<br>~2.7.(월) (8일) |                                 |
| 합격자발표 | 2027.12.21.(화)까지                   | 2028.2.10.(목)까지               |                                |                                 |

※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참고하여 작성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4)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p33-35

□ 그런데 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기한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어 불합격 처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바, 대학입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sup>5)</sup>.

이에 개정안은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응시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현행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학 입학전형 관련 사항 중 원서제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전산장애 등으로 응시 원서제출을 못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학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데 의의가 있음.

- 현행 대학입학 응시원서 제출 등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를 보면, 각 대학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의 안정적 운영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관리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sup>6)7)</sup>, 전산오류 등에 따른 응시원서 미접수

5)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로 하여금 각 대학의 ‘대학입시 전형요강’에 수험생이 전산오류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접수마감 이후 24-48시간 내 보완서류 제출을 인정하는 등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 대응방안’과 관련한 조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국가인권위원회 결정(25진정0119900), 2025.8.8.]

6)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에 개시

피해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시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각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구제 여부를 심사·처리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사안별 구제와 별개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 관련 기관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조치하고 있고, 법률로 획일적인 규정 시 공정한 입시절차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으며, 불가항력에 대한 판단기준·근거가 모호함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아울러,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기한 연장 사유인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입학전형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방법 마련이 필요하며<sup>8)</sup>, 개정안은 원서제출 기한 연장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아니한데 현행법령 상 학생 선발, 입학전형자료 활용, 선발

---

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7)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p5

8)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악용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명확히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전국가적 전산장애 및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연장의 사유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일정의 구분 등의 주체는 대학의 장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구제사유·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시·도 교육청, 대교협, 대학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관계기관 의견]

#### ○ 교육부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구제사유·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시도교육청 : 신중검토

- (대구) 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개정에 앞서 객관적인 증빙을 의무화하고, 단순한 개인 기기 오류나 인터넷 환경 미비 등 응시자 관리 영역의 문제를 배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대학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중검토

- 전형운영 시 대학은 각종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 했을 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귀책 및 구제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들은 결국 사안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현행대로 대학이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도 무방

#### ○ 대학 : 신중검토

- (연세대) 입학전형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각 평가에 필요한 최소 시간을 반영해 접수 기간을 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에 따라 기간 등이 연장되는 경우, 평가 등 이후 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대학에서는 이미 국자원 화재처럼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맞는 자체적인 조치를 취

한바 있으며,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대학의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는바, 권고 사항 등으로 대학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양대ERICA) 대부분의 대학은 자연 재해 등 응시자 책임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 예외적 서류 제출 허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별 전형구조·지원자 규모 등이 상이한데, 법률로 동일한 절차를 강제할 경우 대학마다 필요한 대응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평가 일정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다른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홍익대) 개정안에 나타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관적 기준에 의한 예외 인정 가능성은 대입 전형의 엄정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며, 이미 전형이 진행되는 도중에 제출 기한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기 공지한 입시 일정의 지연뿐만 아니라 대입전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대다수의 수험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85